

중고차 판매자의 보증책임 이행력 제고 필요

송윤아 연구위원. 최창희 연구위원

■ 우리나라 중고차 거래규모는 2015년 기준 367만 대로, 신차 거래량의 2배에 달하는 큰 시장이지만, 중고차 판매자가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알리지 않아 구매자가 피해를 입은 사례가 만연함.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소비자피해 구제방안의 일환으로 판매자가 자동차 성능·상태에 대한 허위 고지 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자동차 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000㎞ 이상을 보증하도록 함. 그러나 판매자 손해배상책임의 경우 구매자가 차량의 성능·상태 점검에 오류·허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실효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판매자의 보증책임 이행에 대한 구속력과 접근성이 미흡함. 이에 보험제도를 통해 중고차 판매자의 보증책임 이행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 우리나라 중고차 거래규모는 2015년 기준 367만 대로, 신차 거래량의 2배에 달하는 큰 시장임.
 - 중고차 평균 판매가격을 800만 원으로 가정했을 경우¹) 금액기준 시장규모는 약 29조 원으로, 중고차시장은 소매유통시장(2015년 기준 약 300조 원)의 10%를 차지하는 시장임(〈그림 1〉참조).
 - 다만, 상기 중고차 거래대수는 이전거래(당사자 매매와 업체 매매)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다소 과대 집계되었을 가능성이 있음.²⁾
- 중고차 판매자가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알리지 않아 구매자가 피해를 입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
 - 2014년 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중고차 매매 관련 민원 851건의 분석 결과, 판매자 또는 매매 중개인이 중고차의 상태를 정확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민원이 339건(39.8%)으로 가장 많음(〈그림 2〉참조).
 - 다음으로 허위매물 237건(27.8%), 이전비·계약금 관련 123건(14.4%)의 순이었고, 기타 명의

¹⁾ 공식적인 가격은 없지만 중고차시장에서는 대략 800~900만 원으로 가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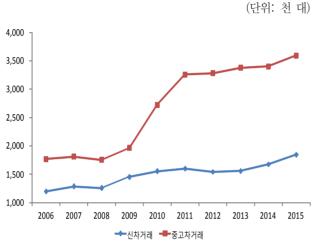
²⁾ 중고차 매매의 경우 중간에 매매업체가 명의이전에 포함되기 때문에 중고차 한 대의 거래에 2개 이상의 판매대수가 포함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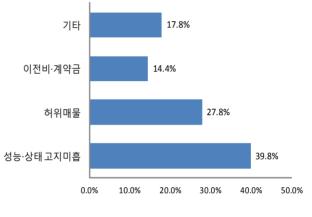
이전 지연. 차량을 구매하지 않은 소비자 협박 등이 있음.

- 차량 상태 고지 미흡 관련 민원 중에는 고지한 내용과 달리 차량 성능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139 건(41.0%)으로 가장 많았음.
 -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실제 차량의 상태가 불일치한다는 민원이 80건(23.5%), 사고 차량을 무사고 차량으로 고지한 경우가 44건(12.9%). 주행거리를 조작한 경우가 35건(10.3%) 등임.

〈그림 1〉 우리나라 신차 및 중고차 거래량 추이

〈그림 2〉 중고차 민원 현황(2014. 1~2015. 10)





주: 중고차 매매는 당사자 매매와 업자 매매를 포함함. 자료: 국토교통부

주: 중고차 매매 관련 민원 851건을 대상으로 함. 자료: 국가권익위원회.

- 현행법에서는 소비자피해 구제방안의 일환으로 판매자가 자동차 성능·상태에 대한 허위 고지 시 손해 배상책임을 지고, 자동차 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000㎞ 이상을 보증하도록 함.
 - 판매자가 자동차 매매를 알선할 때에 고지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함으로써 자동차 매수 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3)
 - 판매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2,000 만 원(법인이 아닌 경우 1,000만 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함.
 - 이 경우 성능·상태점검자가 거짓으로 성능·상태점검 내용을 제공한 때에는 판매자는 성능· 상태점검자에게 구상할 수 있음.
 - 판매자는 매매알선이 완성된 경우 구매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금액, 보증보험회사 및 공탁 기관, 보장기간 등을 설명하고 관계증서의 사본 및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함.

^{3)「}자동차관리법」제58조의3.

- 또한 판매자는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자동차 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000km 이 상을 보증하여야 함.4)
- 그러나 판매자의 손해배상책임과 보증책임의 경우 중고차 구매자가 차량의 성능·상태점검에 오류· 허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판매자가 보증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음.
 - 중고차 판매자는 차량 인도일로부터 적어도 30일간 또는 주행거리 2,000㎞를 채울 때까지는 자동 차 성능을 보증해야 하나. 책임을 회피하는 등 판매자와 구매자 간 충돌이 빈번함.
 - 중고차 매매업체가 개인 판매자 또는 성능점검기록부를 작성한 곳에 책임을 미루거나⁵⁾, 보증을 약정한 부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리나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경향이 있음.
- 이에 보험제도를 통해 판매자의 보증책임 이행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보증책임의 실효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판매자가 수리비보상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수리비보상보험은 자동차 인도 후 주행거리가 2,000km를 초과하지 않거나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고장에 대해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발생한 수리비를 보상함.
 - 다만, 판매자의 수리비보상보험 가입의무화는 구매자를 보호함으로써 중고차시장을 보다 활성화하는 반면, 판매자의 보험료 부담이 소비자에게 차량가격 인상으로 전가될 여지가 있음.
 - 따라서 동 제도 도입 시 '보증책임 이행 및 거래의 안전성 제고'와 '차량가격 인상' 간 상충관계가 있음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kiqi

^{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3항.

^{5) 10}월 28일 함진규 의원은 중고차의 성능·상태 관련 분쟁 발생 시 판매자가 성능·상태점검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전가하는 등 보증책임의 주체가 불명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능·상태점검 관련 손해의 배상주체를 성능·상태점검자로 규정하는 법안(「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